

한국문제 유엔이관 이후, 유엔총회에서 미소양군 철수문제 논의과정*

유지아**

목차

- I. 머리말
- II. 전후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문제 유엔이관
- III. 유엔총회의 미소양군 철수문제 논의
- IV. 유엔한국위원단 구성과 주한미군 철수
- V. 맺음말

I. 머리말

미국은 공산진영에 대한 봉쇄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한반도 점령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주된 임무인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인 귀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¹⁾ 1945년 8월 15일 미국 정부는 하지가 이끄는 제24군단에 북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5S1A5B803712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희대 한국현대사연구원 연구교수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 결정과 동시에 미국 정부와 군부는 점령군이 신속하게 이동할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지시했다. 이에 재촉을 받은 맥아더 사령부는 하지에게 수행중인 작전을 중지하고서라도 남한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²⁾ 당시 하지는 참모들에게 미군의 남한 점령 목적에 대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전체 점령을 막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³⁾ 이러한 복잡한 상황 때문에 남한의 점령정책이 계획성 부족과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38선 분할을 제안한 이유는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즉, 패전국인 일본의 식민지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임시적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에 대한 일반원칙은 군사점령을 통해 패전국인 일본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 한반도를 공산주의 진영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빠른 시일 내에 신탁통치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는 정치·이념적인 고려에 의해 수립되었다기보다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희박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한반도의 미군철수를 둘러싼

-
- 1)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 연구 제28호, 2007)에서 미국의 한반도 점령과정과 인식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군은 점령초기에 일본군 무장해제와 일본인 귀환을 일본인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남한에서 점령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을 등용하는 모습을 잘 고찰하고 있다.
 - 2) 주한미군, 『駐韓美軍史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1권, 돌베개, 1988, p.48.
 - 3)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332, Box number 27, 「Historical Journal」 (군사실에 소속되어있는 軍史官이 주한미군사령부참모회의에 참가해 그 회의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 1946.3.11.
 - 4) FRUS, "Report by the State-War-Neavy 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5, Washington, D.C. USGPO, 1961) pp.1095-1096.

갈등은 1945년 9월부터 군부와 국무성 간에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군부는 한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으므로 군비삭감, 병력감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성은 한국이 장기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미소간 대결의 상징적, 이념적 대결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반도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조기철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1947년 후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하자, 미국내 군부와 국무성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미소간의 냉전은 가속화되어, 미국은 소련과의 타협가능성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무장관 마샬은 47년 9월 17일 유엔 총회 제2차 회의 개최연설을 통해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유엔 상정을 선언하였다.⁵⁾ 미국은 이로써 미군의 철수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에서 조속히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국의 결정에 대해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소양군이 동시에 철병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대립하게 되었다. 이는 미소양군의 철군 문제가 단순히 미소군의 한반도내 철군이라는 단일적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국 철수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원덕⁶⁾, 이현경⁷⁾ 등의 논문이 있다. 김원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부터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었음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논리를 전개하였다. 특히 미

5)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1988, p.198.

6) 김원덕, 「주한미군 철수의 논리:1943-1949」, 『政正』, 건국대학교, 1989.

7) 이현경, 「해방 후 남한 정치세력의 외국군에 대한 인식과 양군철퇴논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국 군부와 국무성의 갈등과 이후 냉전적 관점에서 철군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현경은 해방 후 남한의 외국 군에 대한 인식과 양군철퇴 논쟁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외에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단독정부론으로 이어지는 냉전의 소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미국의 탈한정책에 기초한 것이라고 서술한 논문도 있으며,⁸⁾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은 미국내의 국무성과 육군성이 타협한 산물이라고⁹⁾ 평가한 선행연구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뿐만 아니라, 냉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경위와 그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결론 부분에서 이후 유엔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점령군 철수문제와 안보문제를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유엔 총회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전후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문제 유엔이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경제·군사 원조와 양자·다자간 군사동맹을 통해 자국의 세력을 확보하고 소련의

8)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2, p.164.

9) 이원덕, 「한국전쟁 직전의 주한미군 철수」,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나남, 1990, p.198.

팽창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에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된 지역은 동부지중해 지역이었다. 1946년 소련이 동부지중해 지역에 대한 공개 진출을 선언하자, 미국은 동부지중해가 소련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유럽·중동·아시아가 소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1947년 2월 27일 국무차관 애치슨(Dean G. Acheson)이 “썩은 사과 하나가 바구니 속의 다른 사과를 모두 썩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그 동쪽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것은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거쳐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거쳐 유럽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¹⁰⁾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아시아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후 처리 및 건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1946년 여름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자 내전이 본격화되었고, 1947년 1월 미국이 조정을 포기한 후에는 공산당이 우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국의 공산화는 아시아 재건계획과 대소련정책에서 중국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의 공산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우방국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였으며, 그 우방국으로써 아시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일본중시론’이 대두하였으며, 이후 대일점령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¹⁾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중시론’이 대두하면서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47년 3

10) 송광인, 「그리스와 미국의 전쟁:냉전정책의 선언」, 『정책과학연구』 제10집,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0, p.9.

11) 管英輝, 『米ソ冷戦とアメリカのアジア政策』, ミネルヴァ書房, 1992年, p.199.

월 10일 미국무성 차관보인 힐드링(John R. Hilldring)은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the Economim Club of Detroit) 연설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심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소봉쇄정책 이행에 실패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봉쇄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¹²⁾ 이는 미국의 주도하에 대일점령정책이 실시되면서 일본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지만, 한반도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일본 또한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각심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당시 일본 내에서 더욱 팽배해 있었고, 점차 미국도 이러한 일본의 사고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47년 후반부터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인하여 미소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지자, 미국정부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1947년 8월과 9월에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와 드레이퍼(W.H. Draper) 육군차관을 각각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남한에 보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한국의 상황과 전망을 조사하여 워싱턴에 보고하는 것이었다.¹³⁾ 이 시기 드레이퍼가 작성한 보고서는 남한군대의 육성과 강화, 경제원조의 확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의 수습을 골자로 하였으며, 그 가운데 남한 군대의 육성과 강화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¹⁴⁾

이러한 상황 하에 1947년 후반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점령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대

12) 김원덕, 앞의 논문, p.135 재인용(John H. Hilldring, "Korean House Divided", *OSB* 16, March 23 1947)

13) 유지아, 「전후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경비대(경찰예비대) 창설과정」, 『사립』 제28호, 2007년, pp.62-63.

14) FRUS, *The Far East*, Vol.VI, 1948.1.31., pp.1088-1089.

신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군사력 강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한을 독립시켜 소련과 결별하게 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미 군부는 남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 미군을 철수시켜 일본 점령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정책에서 중국과 일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책을 대부분 대중정책이나 대일정책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군부는 한반도에서의 조기 철퇴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국무성도 한반도를 냉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 군부의 주장처럼 철군을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후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미국 내 국무성과 군부의 견해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국무성의 의견은 조지 마샬(George Catlett Marshall)이 1947년 11월 7일에 보고한 세계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마샬은 모스크바에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간접침략, 파괴활동 전술을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소련의 군사, 경제적 역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공개적 공약 없이도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¹⁶⁾ 결국, 국무성은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이 대소봉쇄적 억압력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보다는 미국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철군문제와 대소봉쇄 정책을 연결시켜 분석한 조지

15) 유지아, 위의 논문, 2007, p.63.

16) FRUS, *The United Nations*, Vol. I, "Policy Planning Staff Report", November 6 1947, pp.770-777.

마샬은 대일정책에 대해서도 전환을 모색하였다. 대일정책과 대일강화문제가 공산진영과 반공진영의 냉전관계에서 하나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다. 대일정책의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1947년 국무장관이 된 조지 마샬은, 국무성에 미국의 전후 냉전정책을 통솔하는 정책기획실을 신설하고 조지 케난 (George Frost Kennan)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케난은 기존의 대일강화조약안¹⁷⁾과 맥아더 사령부의 조기강화론에 대해 “마치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취약한 일본 사회를 공산주의자에게 건네주고, 공산화의 길을 닦아주는 조잡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¹⁸⁾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결국, 케난의 반대로 기존의 강화조약안은 백지화되었고, 케난은 1947년 10월 14일에 대일강화문제에 대한 정책기획실의 견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각서에서 케난은 중국 정세에 대한 더 이상의 개입을 피하고, 그 대신 일본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관점에서 징벌적 강화조약에서 관대한 강화조약으로 대일점령정책을 바꿀 것을 조언했다.¹⁹⁾

결국,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고착화되고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과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7월 23일 3부조정위원회(SWNCC) 산하에 한국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8월 4일에 국무부 동북아시아과의 엘리슨(John M. Allison)이 기초한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

17) 1947년 8월 5일에 작성한 기초안으로 미영중소 4개국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점령 목적이 비군사화와 배상에 있으며, 동시에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점령을 종결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소가 합의하여 25년간 일본에 재군비를 금지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 일본 경제를 연합국의 감독하에 둔다는 징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8) Kennan, George F, *Memoris 1925-1950*,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 Company, 1967, p.376.

19) FRUS, *The Far East*, Vol.VI, “PPS10” 1947.10.14., pp.537-543.

(SWNCC 176/30)”을 채택하여 3부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한반도 전체를 맡기는 것이다. 한국을 소련에 떠넘기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적·경제적 개입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가능한 빨리 취해야 한다. 즉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증명하고, 미국인과 세계 여론에는 미국이 국제적 공약, 즉 모스크바 결정과 유엔헌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²⁰⁾

이 문서는 미국이 한국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엔을 활용한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군부의 철군요구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안전보장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26일에 애치슨의 후임으로 국무차관에 취임한 로베트(Robett A. Lovtt)는 소련외상 몰로토프(V. M. Molotov)에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국 회담을 개최하여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9월 1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²¹⁾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함으로써 미군의 철수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에서 조속히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0) *Ibid*, “한국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1947.8.4, pp.738-741.; 조이현,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p.271.

21)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pp.123-124.

Ⅲ. 유엔총회의 미소양군 철수문제 논의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이 무산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독립문제’ 의제 채택과 한반도 상황 조사 및 남북한에서 실시될 선거를 감독할 ‘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제출했다.²²⁾ ‘한국독립문제’를 유엔총회 의제로 제출한 것은 모스크바 협정 가맹국(중국, 소련, 영국, 미국)이 참가하는 4개국 회담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하지는 미국의 제안을 소련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²³⁾ 당시 미국측 유엔 대표였던 마셜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제82차 본회의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유엔총회 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미국의 방침임을 밝히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계속 한국문제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이유는 유엔에 한국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한국의 조기 독립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촉진한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먼저 유엔에 한국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하는데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에 대한 소련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²⁴⁾

미국은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처리방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엔총회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²⁵⁾ 이에

22) *Official Records: Third Session Supplement*, No.9(A/575),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보고서 제1부 제1권, 1948. 7. 21., p.1.

23) Document A/AC.19/W.6, pp.64-66.

24) 平山龍水, 『東アジア冷戦の起源—朝鮮半島分斷の構図』, 信山社, 2002, p.422.

25) 유엔헌장 제10조는 유엔총회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심의 중인 상황을 제외하고 유엔헌장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

대해 소련은 미소간 협정 및 국제공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 중 적국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이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유엔헌장 제107조의 규정을 들어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에 반대하였다.²⁶⁾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미국의 제안에 중국, 시리아, 인도, 영국 대표는 호의적이었으나 폴란드 대표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심의와 보고를 제1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백러시아 사회주의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공화국,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6개국은 이 결정에 반대했으며, 근동(Near East)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권 의사를 밝혔다.²⁷⁾

또한 소련은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처리할 경우, 한국 국민 대표가 의사수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한 대표가 동시에 유엔에 초청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하여, ‘진정한 한국 국민 대표’를 확인하기 위한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감독할 ‘위원단’ 파견을 주장하였다.²⁸⁾ 즉, 미국이 의제로 삼고자 제안한 내용은 유엔 감시 하에 한반도에 단일한 국회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1948년 3월 31일까지 선거를 실시하고, 정부 수립 즉시 국방경비대(National Security Force)를 창설하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면 소련과 미국 군대가 한국으로부터 조기에 완전히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개황, 2008, 외교부)

26) 제107조는 유엔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 취했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개황, 2008, 외교부)

27) *Ibid.*,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A/575), p.1.

28) FRUS, Vol.6, “주한미군 정치고문(제이콥스)이 국무장관에게”, 1947.9.25., pp.815-816.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주요한 임무를 (1) 각 지역에서 선거기간 중 한반도에 주재하면서 한반도 전역을 자유로이 순회하고 감찰하는 권한을 가짐, (2) 선거, 국회의 조직, 정부의 구성 그리고 점령군의 철수에 관한 협정체결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협의가 가능함, (3) 유엔총회에 보고 또는 본 결의문이 규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유엔총회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총회가 판단할 경우 총회의 여하한 주무기관에 대해서도 보고하며, 한국 독립의 유지를 위한 유엔의 추가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권고를 행함²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제안대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자,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소양군을 동시에 철수하자는 제안으로 응수했다. 1947년 9월 26일, 소련은 1948년 초까지 미소양군을 철수시키고, 한국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자고 제안했다.³⁰⁾ 이러한 소련의 제안에 미국은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철군문제도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³¹⁾ 미국과 소련의 엇갈린 의견을 바탕으로 제1위원회에서는 선출된 남북한 국민대표가 토의 과정에 참가하는 문제와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국 철수문제 등 두 가지가 주요 안건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선출된 남북한 국민대표를 토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며, 1948년 초에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남북한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그 후 한국정부의 수립문제를 한국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둘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³²⁾

29) *op. cit.*,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A/575), p.1.

30) 『조선일보』, 1947.9.26.

31) 정용욱, 「1947년의 철군논의와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p.216.

32) *op. cit.*,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유엔총회는 제1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1947년 11월 13일과 14일에 걸쳐 진행된 제111차 및 제112차 본회의에서 소련, 미국, 필리핀,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백러시아, 파나마, 폴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수정 없이 찬성 43표, 기권 6표(백러시아,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소련, 유고슬라비아)로 1947년 11월 14일에 통과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길기는 하지만, 본 논문의 주요한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두 서술한다.

(1)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한국 국민대표가 한국독립문제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것을 결의함. (2) 주둔 중인 군 당국에 의해 지명 받은 자가 아니라 한국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자가 한국 국민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한국에 파견하여 전국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함. (3) 한국 국민이 자유와 독립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협의할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성년 선거권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며 선출된 대표자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 (3) 중앙정부 수립 직후 한국임시위원단과 협의하여 국방경비대(national security forces)를 조직하고 그 외 모든 군사단체와 유사단체를 해산하며, 남북한의 군 당국과 민정당국으로부터 모든 정부 기능을 이양 받을 것. (4) 점령국과 그들의 군대를 가급적 신속하게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며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완료할 것을 권고함. (5) 한국의 독립 달성을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민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간섭을 삼가고, 그 이후로는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할 것을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청함.³³⁾

결의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소양군 철수와 관련하여서는 “(4) 점령국과 그들의 군대를 가급적 신속하게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며,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먼저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통해 한국 국민의 정부를 선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상의 절차나 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소련이 제안한 “1948년 초에 미국 및 소련이 각각 남북한으로부터 동시에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한국 국민정부의 수립문제를 한국 국민 스스로에게 맡겨둘 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소양군 철수문제는 주로 미소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유엔이 총회 제1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유엔과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독립 문제에 관해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을 적용한 유엔총회임시위원회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협의³⁴⁾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협의 내용에서 미국 대표는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에서 유엔이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을 명시”하면서, “소련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회 결정을 반대하고 임시위원회가 소련 점령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기는, 미국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소련은 미국과 유엔의 노력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의 결론에는 미국과 달리 소련은 한국의 자유와

33) *Ibid.*, p.4

34) A/AC.18/SR.6 “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essmbly, Summary Record of The Sixth Meeting: 제3차 유엔총회 임시위원회 제6회 회의 요약”, 1948. 2. 24.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점령지역으로부터 동시 철수를 주장하는 소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통일된 중앙정부가 수립되면 그 후에 철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경제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조하며, 미래를 위한 적절한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미래상을 미국이 만들어 나갈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사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미군의 철수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할 수만은 없었다. 1948년 8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는 만큼 한국군 편성과 국내 치안이 확보될 때까지 철군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³⁵⁾ 한국정부의 철군 연기 주장은 대통령 특사로 미국에 파견된 조병옥과 한국 유엔 특사인 김활란을 통해서도 미국에 전달되었다.³⁶⁾ 이들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당분간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훈련받고 장비를 갖춘 한국군을 창설하여 발전시켜 줄 것을 바랐으며,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전력설비 및 전기산업에 초점을 둔 경제 원조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에서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군사,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병력을 주둔하는 대신 부담이 적은 경제 원조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정치, 이념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정책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대소봉쇄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35) 『서울신문』 1948.8.21.

36) 『한성일보』 1948.9.12.; 『서울신문』 1948.9.14.

IV. 유엔한국위원단 구성과 주한미군 철수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및 한국의 철군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48년 12월 11일에 개최된 제186차 전원회의(plenary meeting)였다. 이 회의에서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가 결의하여 채택을 권고한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제1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이 심의에서 기존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남북한의 접촉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위원단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한 회원국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오스트리아,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를 파견하자는 캐나다 대표단의 제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0, 기권 3으로 채택되었다.³⁷⁾ 그리고 새롭게 파견되는 위원단을 ‘유엔한국위원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의 권한에 대해서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 195(III)에 규정되어 있는데,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결의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위원단을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사업을 계승하여 수행하고, 본 결의에 명시된 한국정부의 지위에 유의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임무로는 먼저,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총회가 설정한 제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통일과 한국 국방군(Korean security force)의 통합을 실현하도록 주선하고, 한국의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기타 우호적 교류에 대한 장벽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점령군이 철수하

37) Official Records: Fourth Session Supplement No.9 (A/936)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유엔한국위원단 보고서 제1권”, 1949. 8., p.2.

기 이전에 국방군의 창설을 우선적인 임무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의회정치가 더욱 발전하도록 감시와 협의를 수행하며, 점령국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며, 철수가 이행되었을 때 철수 사실을 확인하고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 점령국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유엔한국위원단도 역시 한국에서 의회정치가 실현된 이후에 점령군의 철수를 감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유엔한국위원단에 대해, 한국에서는 1949년 3월 25일 제23차 회의에서 김약수 국회부의장과 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위원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 외국군대 철수를 감독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이에 1949년 4월 22일, 위원단은 1949년 4월 14일자로 주한미국대사가 위원단 의장에게 보낸 통신문을 심의하였다. 이 통신문에는 주한미국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첨부되어 있으며, 특히 제4항에 주한미군이 위원단과 협의를 거쳐 수개월 내에 철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1949년 5월 2일 주한미국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에는 주한 미 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³⁹⁾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⁴⁰⁾

그러나 1949년 5월 23일, 유엔한국위원단은 북한지역 점령군인 소련군의 철수를 시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한국의 통일 문제가 1947년

38) *Ibid.*, p.2.

39)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은 한국의 치안력을 발전시켜 공격보다 외부 침입에 방어할 수 있는 무장력을 키워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49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설립되어, 군사원조 집행과 미군 무기 이양, 각종 군사시설 관리,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 이양 무기의 사용법 교육 등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40) *Ibid.*, p.9.

이래로 유엔의 소관사항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점령군 철수에 관한 시기나 철수촉진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단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⁴¹⁾ 이는 한국에서 점령군의 철군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유엔한국위원단과 남한측이 합의하면서 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철군을 진행하면서 한국정부가 우려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경비대를 강화시키고,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국의 철군 방침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철군에 반대했지만 철군이 기정사실화되자,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과 무기 및 장비 지원을 포함한 더 많은 군사원조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미군 철수 후 국방경비대의 강화와 군사고문단 설치가 이루어졌다.⁴²⁾

1949년 6월 9일에는 제33차 유엔한국위원단 회의에서 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단과 주한미군사령관 로버츠(Joseph N. Roberts) 준장, 그리고 미국대사 무초(John Joseph Muccio)와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무초 대사가 미군철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였다.⁴³⁾ 그 내용 중 철수 과정에 대한 것은 미군이 그동안 점진적인 철수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6월말 경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는 한국정부에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무초 대사는 철수 완료 이후에도 승인받은 500명의 미군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한국에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였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또한 미군철수와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위원단의 감시와 검증에 충분히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철수과정에서 미국은 소련군사전문가의 도

41) *Ibid.*, p.9.

42) 조이현, 앞의 논문, p.299.

43) *Ibid.*, p.10.

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미국이 북한지역의 소련군 철수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하며, 나아가 한국정부와도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은 소련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양국이 서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남북한 지역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소양국의 대립속에서 제기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과 미소양군 철수논쟁은 자주적 한국정부와 통일된 정부의 수립보다는 남북한 지역의 논의 체계 등이 소멸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분단정부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엔총회에서는 1949년 6월 13일, 제34차 회의에서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결의 제4항 (c)에 의해 부여된 점령군의 한국철수 감시 및 검증 임무를 완료하고, 나머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감시하고 검증하여 위원단에 보고할 제3분과위원회(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엘살바도르, 인도로 구성)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49년 6월 20일에 제35차 회의에서 제3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1949년 6월 13일의 위원단 결의내용을 미국정부 및 한국정부에 통지하였다. 제3분과위원회는 6월 21일과 29일 인천항에서 잔류 미군의 마지막 출국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3분과위원회는 1949년 7월 27일 제48차 회의에서 제3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제2차 업무진행보고서를 통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민간행정업무 정리를 위해 김포공항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50명 미만의 공군 병력과 500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전부라고 보고했다. 또한, 1949년 6월 29일에 주한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이 1949년 6월 30일부로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국방군에 대한 미국정부 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통제권도 소멸되었음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군사물자는 군 병력과 함께 철수된 물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수완료일을 기준으로 한국 국방군

에 인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⁴⁴⁾

주한미군의 철수완료 사실은 1949년 7월 8일에 무초 대사가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한에서 무초 대사는 1949년 6월 29일자로 주한미군 철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 인원은 500명 이하이며 승인된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철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⁴⁵⁾ 그리고 로버츠(W. L. Roberts)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도 7월 16일에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부대별 해체일자와 철수선박 승선일자 등 전체 철수계획 일정과 단계별 철수인원을 상세하게 재확인하고, 1949년 6월 29일부로 철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⁴⁶⁾ 마지막으로 무초 대사는 1949년 7월 25일에 재차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1949년 6월 29일자로 주한미군 철수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과도기 군사 및 안전문제에 관한 행정협정이 1948년 8월 24일부로 실효되었음⁴⁷⁾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공군병력인 7명의 장교와 52명의 병력이 잔류하고 있음을 알리며 잔류 병력 또한 김포공항으로부터 1949년 9월

44) *Ibid.*, p.17.

45) Official Records: Fourth Session Supplement No.9 (A/936/Add.1),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Volume II - Annexes:유엔한국위원단 보고서 제2권 부속문서", 1949.8., p.36.

46) *Ibid.*, p.37.

47)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 8월 24일 서명 및 발효되었으며, 전문 및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내용은 미군의 한국철수와 한국점령 종결을 목적으로, 주한미국사령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는 각서를 교환하며 미군철수 완료시까지 본 조약의 군사 및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가 합의하였음을 밝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군을 조직, 훈련, 무장시키고 가급적 신속하게 모든 경찰, 해안경비대, 국방군의 지휘권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지역과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내용.

1일까지 철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렸다.⁴⁸⁾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분단 점령과 더불어 논의되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점령군 철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한국 독립과 외국군대 철군문제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자유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엔총회 논의과정에서 남북의 협의 체제는 더욱 소멸되었으며, 분단국가 가 고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미소양군의 철군이 각각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전쟁 발발과 더불어 다시 미소양군이 재차 한반도로 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V. 맺음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말을 고하고,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공산화하여 친소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한반도에서도 냉전 상황이 격화되자, 미국내에서는 아시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소봉쇄정책 이행에 실패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고착화되고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는 소련과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국내적으로는 군부와 국무성의 미군철수에 대한 분쟁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 전에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문

48) *Ibid.*, p.36.

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국 회담을 개최하여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소련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미국은 9월 1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제안대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자,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소양군을 동시에 철수하자는 제안으로 응수했다. 1947년 9월 26일 소련은 1948년 초까지 미소양군을 철수시키고, 한국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자고 제안했다.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및 한국의 철군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48년 12월 11일에 개최된 제186차 전원회의(plenary meeting)였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를 규정하여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고, 기존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사업을 계승하여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한국위원단의 임무는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의회정치가 더욱 발전하도록 감시와 협의를 수행하며, 점령국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며, 철수가 이행되었을 때 철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위원단은 1949년 7월 27일 제48차 회의에서 제3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제2차 업무진행보고서를 통해 6월 29일까지 미군은 민간행정업무 정리를 위해 김포공항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50명 미만의 공군 병력과 500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미군이 철수하는 동안 한국의 안보는 1945년 11월 13일, 군정 명령 제28호에 의하여 한국국방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고, 주한미군정 국방지휘부(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ce of the Military Government of Korea)가 설치되어 산하에 육군 및 해군부서와 함께 군사국이 설치되었다. 주한미군정 국방지휘부는 경찰에 대한 전반적 지휘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정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1947년 후반까지 조선경비대(Korean constabulary)가 창설되어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1947년 말

조선경비대의 공식 규모는 약 2만 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천명 규모의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다.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된 이후, 유엔한국 위원단이 모든 한국국방군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단이 정치적 통일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몇몇 군사시설과 부대를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육해군과 경찰의 통합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준비하면서 1948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약 5만 여 명 분의 무기와 장비가 도착했으며, 1948년 가을에 미군병력으로 구성된 임시군사자문단이 구성되고, 로버츠준장 지휘아래 임시군사자문단을 계승한 500여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을 창설하였다. 1948년 11월, 국방군 편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국방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자문위원회(War Council)를 두고, 그 밑에 국방위원회(National Defence Committee)와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Bureau), 국방자원통제위원회(National Defence Resources Control Committee), 군사회의회(Military Council)를 두었다. 그러나 본래 40만명을 예정했던 군대의 수에는 미치지 못했고, 본격적인 한국국방군의 형성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루어졌다.

미국은 남한에서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군사,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병력을 주둔하는 대신 부담이 적은 경제 원조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정치, 이념적인 측면과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측면에서 대소봉쇄정책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냉전 인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다시 한반도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군대철수, 한국문제 유엔이관, 주한미군, 유엔한국위원단,
주한미군사고문단

(논문투고 : 2017.11.28 / 논문심사완료 : 2017.12.18 / 논문게재 확정일 : 2017.12.22)

참고문헌

-자료-

Official Records: Third Session Supplement No.9(A/575), First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보고서 제1부 제1권, 1948.

Official Records: Fourth Session Supplement No.9 (A/936)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Volume I: 유엔한국위원단 보고서 제1권”, 1949. 8.

Official Records: Fourth Session Supplement No.9 (A/936/Add.1),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Volume II - Annexes: 유엔한국위원단 보고서 제2권 부속문서”, 1949.8.

A/AC.18/SR.6 “Interim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Summary Record of The Sixth Meeting: 제3차 유엔총회 임시위원회 제6회 회의 요약”, 1948. 2. 24.

FRUS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한성일보』

-저서 및 논문-

김원덕, 「주한미군 철수의 논리:1943-1949」, 『政正』, 건국대학교, 1989.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2.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송광인, 「그리스와 미국의 전쟁:냉전정책의 선언」, 『정책과학연구』 제10집,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0.

유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28호, 2007).

- _____, 「전후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경비대(경찰예비대) 창설 과정」, 『사림』 제28호, 2007.
- 이원덕, 「한국전쟁 직전의 주한미군 철수」,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나남, 1990,
- 이현경, 「해방 후 남한 정치세력의 외국군에 대한 인식과 양군철폐논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 정용욱, 「1947년의 철군논의와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 주한미군, 『駐韓美軍史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1권, 돌베개, 1988.
- 管英輝, 『米ソ冷戦とアメリカのアジア政策』, ミネルヴァ書房, 1992.
- 平山龍水, 『東アジア冷戦の起源—朝鮮半島分斷の構図』, 信山社, 2002.

Discussion of US·USSR military retreat in the UN General Assembly after transfer of the Korean issues to the UN

Yoo, Jia

The United States (US) suggested division of the 38th parallel north after the Potsdam Declaration because it worried about the vacancy of power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Japan's surrender. A significant possibility existed that the Soviet Union (USSR) would occupy some part of this region; thus, this temporary method was suggested to solve colonial territory issues stemming from the defeat of Japan. The fundamental policy of US military occup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ommonly focused on fast transfer of territorial trusteeship and retreat of US military forces. However, the Cold War atmosphere in East Asia was fixated after the second meeting of the US - USSR Joint Commission failed on July 2, 1947. As a result, the US transferred the handling of all Korean issue to the United Nations (UN) to solve external conflict with the USSR and internal disputes between US military command and the Department of States.

The UN's 186th plenary meeting, held on December 11, 1948, was the beginning of discussions about Korean issues and US military retreat. On December 12, the 195th (III)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as established, which ordered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to replace the UN's

temporary commission in Korea and to inherit all formal projects related to Korea. The missions of the UNTCOK were 1) to watch and confer on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based on the free will of the Korean people, 2) to watch actual retreat processes occupants, 3) and to confirm their retreat. On July 27, 1949, the UNTCOK received a second mission to process reports from the Third Codex Committee at their 48th meeting. The UNTCOK confirmed that US military expected a full retreat of forces by June 29, 1949 except for less than 50 air force personnel and 500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 staff members, who only temporarily left from the Kimpo Airport to rearrange public administration.

Meanwhile, the 28th command order came from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on November 13, 1945, which was designed to ensure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and declared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Korean Security Forces and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 of the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The office included army, navy, and military affairs departments, and it held exclusive operational control of police. The US military retreated to benefit Korea, believing that economic support and building cooperation in Far-East Asian was a more cost effective option. In this way, the US planned to give up responsibility for Korean political, ideological, and diplomatic issues, with the exception of except military issues. This Cold War perspective would allow the US to retain military control if a Korean War broke out.

한국문제 유엔이관 이후, 유엔총회에서 미소양군 철수문제 논의과정

Key Words : Military Retreat, Transfer of Korean Issues to the U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